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5944
등록일자	2015.2.12.
결재일자	2015.2.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진희	한문석	박선옥	02/13 김창현		
협조자					

2015년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舊.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렌탈 및 리폼서비스) 운영 계획



2015. 2. .

강 남 구
(사 회 복 지 과)

2015년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舊. 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렌탈 및 리폼서비스) 운영 계획

중증의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장주기별 신체조건에 맞는 자세유지 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특수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I 큰 거

-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II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1.1 ~ 2015.12.31.
- 이용대상 : 만 19세 미만의 중증(1·2급)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목표인원 : 15명
- 서비스내용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중증의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 : 반기별 1회씩 점검 및 소모품 교환, 수리·교정 등
- 서비스횟수 : 렌탈 12개월, 리폼 연2회
- 서비스기간 : 12개월/재판정 4회(최대 5년까지 제공 가능)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구분	평균소득 50% 이하	평균소득 50%~120% 이하	평균소득 120% 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90%)	96,000원(80%)	84,000원(70%)
본인부담금	12,000원(10%)	24,000원(20%)	36,000원(30%)

※서비스가격 : 월 1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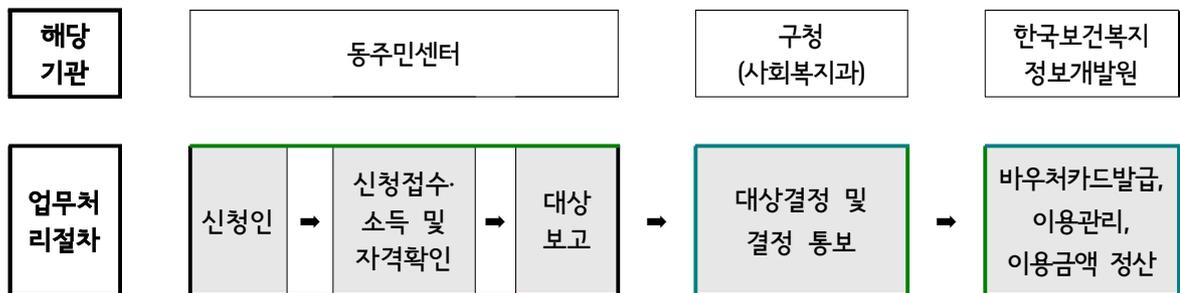
■ 제공기관 현황

연번	제공기관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	비고
1	유진헬스케어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75-28	02-2236-6966	박찬필	기존
2	아이앤유케어	서울시 중구 신당동 247-8 태화빌딩 1층	02-1688-2273	김정애	기존
3	모이텍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223-15	02-6337-5656	정종수	기존

■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 요양보호사, 기기 리폼 관련 자격자

III 사업 추진 절차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류 : 본인 및 부모,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신분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예산집행 절차

예산교부(서울시) ⇒ 간주처리 요청(사회복지과) ⇒ 사업비 예탁(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제공기관별 비용지급 및 정산(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6항
- 업무 수행 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위탁업무 :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업무
- 관리원은 우리구로부터 바우처 비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

IV 소요 예산

- 사업비 : 40,000천원(국비50% 20,000천원, 시비50% 20,000천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장애아동 맞춤형 휠체어렌탈 및 리폼서비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유용할 수 없으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하여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VI 행정 사항

- 신청·접수 시 민원인에게 사업 유의사항 안내 철저 : 동 주민센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에서 1인당 1년 2개 이하 서비스만 이용가능
 - 바우처 생성 후 2개월간 미 사용 시 이용자의 자격 직권 중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이용자 의무이행

◆ 법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할 때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

- 지원기간 만료된 이용자가 추가지원을 원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여 재판정 실시(단 4회만 가능)

붙임 : 1. 소득 판정기준표. 끝.

별첨 1 : 소득판정 기준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1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69천원	24,280	3,571	24,944
2인	1,549천원	47,165	26,513	47,729
3인	2,212천원	67,466	57,497	68,276
4인	2,487천원	75,867	71,317	75,980
5인	2,633천원	80,471	78,397	81,424
6인	2,778천원	84,851	84,258	85,632
7인	2,924천원	89,521	90,369	90,671
8인	3,069천원	94,100	97,779	95,252
9인	3,215천원	98,557	103,894	99,769
10인	3,360천원	102,078	108,758	103,233

※ 11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146천원씩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2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846천 원	56,665	39,191	57,423
2인	3,719천 원	113,621	124,575	115,136
3인	5,308천 원	161,683	177,862	164,396
4인	5,969천 원	182,127	199,987	185,538
5인	6,318천 원	193,298	211,949	197,614
6인	6,668천 원	207,444	226,536	213,091
7인	7,017천 원	213,091	232,265	219,533
8인	7,366천 원	226,818	245,357	235,011
9인	7,716천 원	235,011	252,935	243,784
10인	8,065천 원	253,393	271,273	264,638

※ 6인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349천원씩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